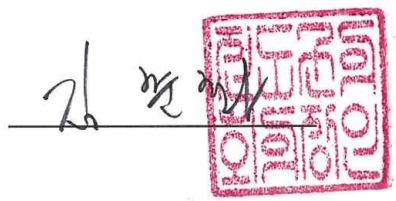
공 포 문

제31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6. 10. 21.)에서 의결된 「**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**」을 이에 공포한다.

진도군의회의장 

2026년 10월 30일

진도군의회 규칙 제1351호

붙임 **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** 1부.

진도군의회 규칙 제1351호

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 중 “지역선거구 및”을 “지역선거구, 의원의 선수 및 성명 순과”로 한다.

제5조 후단 중 “주민”을 각각 “진도군민”으로 한다.

제3장제6절에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

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8조의4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회의록(제48조의3에 따른 중계방송 영상을 말한다)을 기록·보존하여 해당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공개하는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

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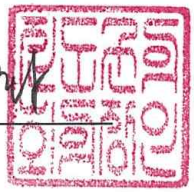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석배정) 의원의 의석은 진도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지역선거구, 의원의 선수 및 성명 순과 ---- -------.
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	제5조(선서) ---------- ----------. --- ---------- 진도군민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진도군민 ---------- ---
<신 설>	제48조의3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

	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제48조의4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회의록(제48조의3에 따른 중계방송 영상을 말한다)을 기록·보존하여 해당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② 공개하는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
공 포 문

제31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6. 10. 21.)에서 의결된 「**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**」을 이에 공포한다.

진도군의회의장 김 [illegible] 

2026년 10월 30일

진도군의회 규칙 제1352호

붙임 **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** 1부.

진도군의회 규칙 제1352호

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, “구성되도록 하여야”를 “구성하여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진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진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(내고장알리미)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대하여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”를 “대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